

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3 일
① 신 고 인	성 명(법 인 명)		주 민(법 인) 등 록 번 호	-
	주 소	(전화 :)		
	명 칭(상 호)		영 업 의 종 류	
	소 재 지	(전화 :)		
②변 경 사 항				
구 분		변 경 전		변 경 후
소유자또는대표자				
영업장의명칭(상호)				
영업장의소재지				
영 업 장 의 면 적				
축산물운반용차량수				
품목추가에의한시설변경		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		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
③변 경 사 유				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고인				(서명 또는 인)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수수료
※ 구비서류				5천원
1. 신고필증 2.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(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) 3. 소재지 변경시 가. 신고필증 나.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. 시설사용계약서(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)				

※ 신고안내

(뒤 쪽)

제출하는 곳	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·군·구	처 리 부 서	축 산 과
유 의 사 항	1. 영업을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 2.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 3. ①신고인의 영업을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·우유류 판매업·축산물수입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[예 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.		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